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
에관한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4. 4. 11.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2. 25.
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2. 26.

다. 상정일자 :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
(1994. 4. 11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시민국장 강
신재)

가. 제출이유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
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
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재활용참여 시민·단체 및 사업자
에 대한 장려금·보상금지급 규정
- 마포구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근거
-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의 보고의
무 및 구청장의 조사·검사 기능
- 1회용품 사용자재등 위반자에 대한
과태료부과·징수 근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
재)

가. 동조례(안) 제5조에서 쓰레기줄이기와
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하
는 구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
여 동협의회 위원정수·임기 및 운영
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어야
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'92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
레기감량화 및 분리수거정책은 민·관
·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
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
실정임. 행정기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
거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을
분석,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

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
도하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
재활용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등 필요
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
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정연우 위원) : 재활용추진협의회장
·위원정수·임기·의결정족수 등 재활
용추진협의회회의 구성요건이 미비한 이
유는?
- 답변(작업계장 황동연) : 재활용추진협의
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
제정했으며, 추후 시행상 미비된 사항
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

6. 수정안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4. 11.
홍성환위원외 1인

나. 수정이유

-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요건이 현 조
례(안)에는 상당히 미흡한 바 재활
용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
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
함.

다. 수정 주요 골자

- 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정함(안
제5조제2항)
-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구청장이
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(안 제5조
제3항)
- 위원의 임기를 정함(안 제5조제4항)
-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·
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
적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제5항)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
에관한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1994. 4. 11.
발 의 자 : 시민보건의원장

1. 수정이유

-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요건이 현 조례
(안)에는 상당히 미흡한바 재활용추진
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 조
례(안)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협의회의 구성 위원수를 정함.(안 제5
조제2항)
-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구청장이
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.(안 제5조제
3항)
- 위원의 임기를 정함(안 제5조제4항)
-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·여
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
거를 규정함(안 제5조제5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

에관한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
에관한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 구청장은 쓰레기
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
시민·단체·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
으로 구성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
(이하 "구 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
영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는 회장·부회장 각 1인을 포
함한 7인내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- ③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
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협의회 회장·부회장 및 위원의 임
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
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
수당·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
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
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원안·수정안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단체·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 로 구성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"구 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·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단체·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 로 구성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"구 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협의회는 회장·부회장 각 1인을 포함 한 7인 내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 ③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④협의회 회장·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·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
촉진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2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2. 25
제 출 자 : 마 포 구 청 장

제정 이유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 제정골자

- 재활용참여 시민·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·보상금지급 규정(안, 제4조)
-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근거(안, 제5조)
-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의 보고의무 및 구청장의 조사·검사 기능(안, 제6조)
- 1회용품 사용자제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 근거(안, 제7조)

제정 근거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1992. 12. 8 법률 제4538호)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(1993. 6. 24 대통령령 제13915호)
- 사업67511-2271(93. 1. 1)호 사업 67511-4615(93. 12. 28)호 지시공문

조례(안) : 별 첨

예산조치 필요성 : 재활용추진 위원회 수당등 예산조치 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
촉진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·동법시행

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·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·폐기물관리법·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및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(이하 “시 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구청장의 책무)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1.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
2.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·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
3.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재활용단지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5.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

제 3 조(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)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장려금 등의 지급)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·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·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5 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단체·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"구 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구 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·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
2.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배출자

②조사·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.

제 7 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한 후,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촉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③구청장은 과태료부과·징수가 위법·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(변경)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청문) 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

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.

제 9 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과태료부과·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의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귀속)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,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.

제13조(규칙제정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

계 호

수 신

계 목 : 과태료 처분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첨 부 :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

(별지 제10호서식)

과 태 료 납 입 고 지 서

납 입 고 지 서

계	호	년도 일반회계							
납부자	주소								
	성명								
(관)임시적세의수입 세입과목 (항)잡 수 익 (목)과 태 료									
위반	법						제	조제	항
금	백	십	만	천	백	십	원		
	일금□							원정	
납부기한		년 월 일							
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 규정에 의거 부과되 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수	입	년 월 일							
일	부	마포구청장 (인)							

영 수 필 통 지 서

계	호	년도 일반회계							
납부자	주소								
	성명								
(관)임시적세의수입 세입과목 (항)잡 수 익 (목)과 태 료									
위반	법						제	조제	항
금	백	십	만	천	백	십	원		
	일금□							원정	
납부기한		년 월 일							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.									
수	입	년 월 일							
일	부	은행 지점(인) 마포구 징수관 귀하							

영 수 증

계	호	년도 일반회계							
납부자	주소								
	성명								
(관)임시적세의수입 세입과목 (항)잡 수 익 (목)과 태 료									
위반	법						제	조제	항
금	백	십	만	천	백	십	원		
	일금□							원정	
납부기한		년 월 일							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							
수	입	년 월 일							
일	부	은행 지점(인)							

<별지 제3호 서식>

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

납 부 의 무 자	①성 명		②주 민 등 록 번 호	
	③주 소			
④과 태 료 납 입 고 지 서 번 호				
⑤위 반 사 항				
⑥과 태 료 금 액			⑦당 초 납 부 기 일	

1.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인

<별지 제 4 호 서식>

계 호

과 태 료 부 과 취 소 (변경) 통 지 서

주 소 :

성 명 :

① 고 지 금 액	② 취 소 (변경) 액	③ 차 액	비 고

취 소 (변경) 사유 :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인

<별지 제5호 서식>

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
신 청 인	①성 명	(한자)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 역	④부 과 기 준		⑥납입고지서번호	
	⑤고 지 받 은 일 자		⑦과 태 료 금 액	
	⑧과 태 료 처 분 사 유			
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

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: 인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<별지 제6호 서식>

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

계 호

수 신

발신 마포구청장

인

제 목 :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1.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.

2.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	①성 명	(한자)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소			
과태료 처분 내역	④고지일자		⑥과태료금액	
	⑤부과기준		⑦이의제기일자	

첨 부 : 1.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.

2.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.

(별지 제7호서식)

과 태 료 수 납 부

①일련 번호	②통지서 번호	③과 태 료 처분통지일	④독촉장 발부일	납부기한		⑦금 액 (원)	납 부 의 무 자		⑩과태료 납부일	이 의 제 기	
				⑤당 초	⑥독 촉		⑧성 명	⑨주 소		⑪이의제기일	⑫법원통보일